

등록하여야 하는 기술사의 직무의 종류 및 범위(제17조의2제1항 관련)

직무 종류		직무 범위
생산관리		공장관리, 포장, 품질관리
디자인		제품디자인
건설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토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적,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해양
	(조경)	조경
	(도시·교통)	교통, 도시계획
광업 자원	(채광)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광해방지
기계	(기계제작)	기계
	(기계장비설비·설치)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	철도차량
	(조선)	조선
	(항공)	항공기관, 항공기체
	(자동차)	차량
	(금형·공작기계)	금형
재료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 금속제련, 세라믹
	(용접)	용접
	(도장·도금)	표면처리
화공		화공
섬유		섬유, 의류
전기· 전자	(전기)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자)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 통신	(정보기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통신)	정보통신
식품		수산제조, 식품
농림 어업	(농업)	농화학, 시설원예, 종자
	(축산)	축산
	(임업)	산림
	(어업)	수산양식, 어로
안전 관리	(안전관리)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환경· 에너지	(환경)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에너지·기상)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 비고: 직무종류의 괄호는 함께 적을 수 있다.